

코로나19 확산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절차 간소화 안내

□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관련 지침 변경 사항

- (사업계획서 수시 승인) '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'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시 승인
- (지원 근로자 확대)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, 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 동안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도 지원 허용
- (근태관리 요건 완화) 재택근무에 한하여 이메일 및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하여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근태관리 방식도 허용

사업명	안내 문구
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	<p>○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무비 지원제도의 요건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.</p> <p>* (지원금액)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(주 3회 이상 활용 시 주당 10만원, 주1~2회 활용 시 주당 5만원)</p> <p>① 심사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 가능</p> <p>②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, 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 동안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</p> <p>③ 재택근무에 한하여 전자·기계적 근태관리시스템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메일 및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하여 근태관리 내역을 증빙하면 지원 가능</p>

<고용장려금 시행지침 변경 내용>

페이지	현행	변경	사유
24	<p>③ 심사위원회는 회차별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 마감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의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,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	<p>③ 심사위원회는 회차별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 마감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의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,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- <u>다만, 코로나19 전염 상황을 고려하여 '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'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시 승인</u> 	<p>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수시 승인을 통해 적시에 사업주 지원 필요</p>
159	<p>(제외대상) 신규채용 후 유연근무제 활용 전까지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, 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 동안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</p>	<p>지원 허용</p>	<p>유연근무제를 통해 코로나19 전염 상황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폭넓게 보호할 필요</p>
161	<p>(근태관리) 전자카드, 지문인식, 타임레코드, 그룹웨어 등 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</p>	<p>(근태관리) 전자카드, 지문인식, 타임레코드, 그룹웨어 등 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.</p> <p><u>단, 재택근무제에 한하여 이메일 및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하여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함</u></p>	<p>전자기계적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긴급한 지원 필요</p>
167	<p>8. 제출서류 재택근무제·원격근무제: 제도 활용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(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전자적·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)</p>	<p>8. 제출서류 재택근무제·원격근무제: 제도 활용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(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전자적·기계적 방식뿐만 아니라 <u>이메일 및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·종료시각 증빙도 인정</u>)</p>	<p>전자기계적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긴급한 지원 필요</p>